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3. 19

예천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및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정보 전달과 고령화 지역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 및 운영(안 제3조)

-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 지정 운영
-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 부담,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

나. 지원기준 등(안 제4조)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 방송이 없는 경우 또는 10년 경과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 방송이 소실·멸실 또는 사용

곤란의 경우,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에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 한정

다. 지원절차 등(안 제5조)

○ 마을 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murayzzang@korea.kr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장에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마을방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관련 근거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